

#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183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8 | 고 성 군 수     |
| 나. 회부일자 : 2009. 11. 20       |             |
| 다. 상정·의결일자 : 2009. 12. 4     |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 2.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기금 300백만원 조성(2003~2007년)
-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 추진
-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 추진

### 4. 참고사항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
-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기금 3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 2010년도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15,000천원을 집행코자 하는 안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의 범위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도에 이자수입은 4,125천원, 지출은 15,000천원으로 이러한 수지로 운용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발생도 예상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책과 여성아카데미 운영의 효과는 무엇인지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현재와 같은 수입과 지출대로 운용한다면 원금손실도 우려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답 : 이자율이 낮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을 확대 조성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할지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문 : 여성아카데미에는 주로 어떤 층이 참여하는지. 대상을 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하여 면 거주여성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답 : 연령은 20세부터 65세까지로서 대상은 고성군 전체 여성으로 하며 2009년도의 경우 66명이 접수하여 49명이 수료했습니다. 면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은 거리문제 등으로 참여를 잘 안하지만 홍보를 하여 많은 여성이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 : 기금 예치를 생명환경농업추진에 대한 협조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등을 감안 지역농협에 예치할 수는 없는지 ?
- 답 : 기금의 총괄 관리부서와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 7. 토 론 : 없음

## 8. 심사결과 :

- 2009. 12.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